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95

발의연월일: 2025. 2. 17.

발 의 자: 박홍배 · 이용우 · 김남근

이광희 • 박지원 • 윤준병

박희승 · 민병덕 · 고민정

김태선 • 백승아 • 송재봉

박정현 · 김주영 · 서영교

박수현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오늘날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간접고용, 하청, 파견,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등장하고 있음. 하지만 현행 노조법은 사업주의 정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여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배·결정권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, 정당한 노동쟁의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등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.

또한 쟁의행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에 제한이 발생하며, 이로 인해 불법으로 규정되는 쟁 의행위를 이유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해 사 실상 노동쟁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.

이에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헌법상 노동3권 사

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근로조건에 대해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쟁의행위 범위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. 또한 손해배상 면제책임 및 청구 대상을 추가하고,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면제와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 및 기여도에 따른 책임 범위 지정등을 규정하여 노동3권 제약을 방지하고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함(안 제2조, 제3조및 제3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호라목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"勤勞條件의 決定에 관한 主張의 不一致로 인하여 발생한 紛爭狀態를 말한다"를 "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"로 한다.

이 경우 직접 계약관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·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이 法에 의한 團體交涉 또는 爭議行爲로"를 "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,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.
- ③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노무 제공 거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

- ④ 「신원보증법」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, 쟁의행위,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.
- ⑤ 법원은 단체교섭, 쟁의행위,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,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. 이 경우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법원은 청구가 있는 경우 각 배상의무자별로 면제, 감경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책임의 면제)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,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2條(定義) 이 法에서 사용하는	第2條(定義)
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.	,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使用者"라 함은 事業主, 사	2
업의 經營擔當者 또는 그 사	
업의 勤勞者에 관한 사항에	
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행동	
하는 者를 말한다. <후단 신	<u>이 경우</u>
<u>설></u>	직접 계약관계 당사자가 아니
	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
	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
	로 지배・결정할 수 있는 지
	위에 있는자도 그 범위에 있
	어서는 사용자로 본다.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"勞動組合"이라 함은 勤勞者	4
가 主體가 되어 自主的으로	
團結하여 勤勞條件의 유지・	
개선 기타 勤勞者의 經濟的・	
社會的 地位의 향상을 도모함	
을 目的으로 組織하는 團體	
또는 그 聯合團體를 말한다.	
다만, 다음 各目의 1에 해당	

하는 경우에는 勞動組合으로 보지 아니한다.

가. ~ 다. (생 략)

<u>라. 勤勞者가 아닌 者의 加入</u> 을 허용하는 경우

마. (생략)

5. "勞動爭議"라 함은 勞動組合 과 使用者 또는 使用者團體 (이하 "勞動關係 當事者"라 한다)間에 賃金‧勤勞時間‧福祉‧解雇 기타 待遇등 勤勞條件의 決定에 관한 主張의 不一致로 인하여 발생한 紛爭狀態를 말한다. 이 경우 主張의 이 지구 함은 當事者間에 合意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自主的 交涉에 의한 合意의 餘地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.

6. (생략)

第3條(損害賠償 請求의 제한) 使用者는 이 法에 의한 團體交涉 또는 爭議行爲로 인하여 損害를 입은 경우에 勞動組合 또는 勤勞者에 대하여 그 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.

<신 설>

<u><신</u>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----.

-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.
- ③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노 무 제공 거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배상청구의 대상이 되 지 아니한다.
- ④ 「신원보증법」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 섭, 쟁의행위,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.
- ⑤ 법원은 단체교섭, 쟁의행위,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,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거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. 이 경우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법원은 청구가

<u><신 설></u>

<u>있는 경우 각 배상의무자별로</u> 면제, 감경 여부 및 정도를 판 단하여야 한다.

제3조의2(책임의 면제)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,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 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.